1. 법률

식품위생법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 3. 식품접객업

2. 총리령(명령, 행정입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법 제5조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 2.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가. 공통시설기준
 - 1) 영업장
 - 2) 조리장
 - 3) 급수시설
 - 4) 화장실
 - 가) <u>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u>.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 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u>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u>.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5.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 (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 6.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 ×) 2015 서울시 9급
- 7.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나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〇, ×) 2015 사회복지직 9급
- 8. 법령의 효력이 시행일 이전에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 ×) 2015 사회복지직 9급
- 9.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에도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 ×) 2015 사회복지직 9급
- 10. 개인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 ×) 2016 교육행정직 9급
- 11. 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 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〇, ×) 2008 국가직 9급
- 12.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형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〇, ×) 2017 국가직 7급
- 13. 개정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 2021 국가직 9급

14. 관계법령은 민간연수원과 같은 교육시설을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이 소재한 관청으로부터 먼저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후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관청으로부터 숙박업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2009 국회직 8급

민간연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용도변경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관청으로 부터 곧장 숙박업허가를 받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여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 ① 甲이 숙박업허가의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면 이익형량상 숙박업허가에 대한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
- ② 甲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숙박업허가에 대한 취소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③ 甲에 대한 숙박업허가에 하자가 있어 처분청이 취소하는 경우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
- ④ 유사한 연수원을 소유한 乙은 평등원칙을 근거로 자신에게도 용도변경허가 없이 소유시설에 대해 숙박업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甲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숙박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甲은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15.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인 공적 견해나 의사의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 ×) 2017 지방직 7급
- 16. 선행조치는 반드시 관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비과세를 시사하는 명시적 언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2018 서울시 1회 7급
- 17.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 ×) 2018 경행경채 3차
- 18.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가 아니라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 ×) 2018 국가직 7급
- 19. 법령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에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 2016 지방직 9급
- 20. 신뢰보호원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1 국가직 9급
- ① **사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일간지에 "의료취약지 병원설립 운용자에게 5년간 지방세 중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甲은 의료취약지인 B군(郡)에서 병원을 설립·운용하였으나, B군수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甲에 대해 군세(郡稅)인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검토의견: 보건복지부장관은 권한분장관계상 재산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공고는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 ② **사안**: 甲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 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받을 것을 신뢰하고 그에 기해 일정한 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그 후 甲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거부당하였다.
 - **검토의견**: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 따라서 甲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 ③ **사안**: 건축주 甲은 건축사 乙에게 건축설계와 신청행위를 의뢰하였는데 乙의 귀책사유로 건축한계선을 위반하였고 이로써 철거명령을 받게 되었다.
 - **검토의견**: 甲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乙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甲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 ④ **사안**: 甲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 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검토의견: 甲은 위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21.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 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정답: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④ 15. ○ 16. ○ 17. ○ 18. × 19. ○ 20. ①

2.

```
34 가 .
가 ·
```

3. ? (2022 7

```
1 ( )

가 ·

33 ( ) 30

가 16 29 3

(29 2 )

가 가 가 ( ' '
```

33 10 .

가 .

, 가 ,

```
98 2 ( ) _____.
.___.
10 ____.
, _____(
)____10
```

```
가
                                                                         2005. 2. 25, 2004
    4031).
                                                    가
                                                             가
                           가
                                                    (0)
                (0)
                              )
     ×
                                          가
    가
                                                                           (
                                                                                    )
                                                                   가
4.
                             - 甲
                                          甲 -
                                                         甲 -
         甲
     2000. 2.
                                                         2007. 5. 1.
                                                                           2007. 9. 1.
                      2003. 2. 1.
                                          2003. 4. 1.
         1.
                        : 2003. 2. 15.
            (甲
                                   가
                                         )
                                                                  가
                                                                       (Topic 73
                                   2007
           2000
                                                                 가
            2003
                                     가
                                                                                 2003
              甲
                                        - 甲
                                                        甲 -
                                                                             甲 -
     2000. 1. 1. ~ 2000. 12. 31.
                                                        2002. 4. 1.
                                  2002. 2. 1.
                                                                            2007. 7. 1.
                                  : 2002. 2. 20.
     ・甲
                              5
              가
                                             가
                                                                                          甲
```

가

107 ()	가	

6.

	11	(가)	1	가		가	
7.		34 ,	,	. 43		가•		
					()	()

8. 「) (, x) 2017 가 () 7 (가 9. [「] L 가 가 . (, ×) 2014 가 9 () (x) 가 10. ? 2017 가 ()7 Γ 가 × × × × 11. . (, ×) 2020

9

: 3. 8. × 9. 10. 11. ×

대통령령(○○법 시행령) ─ 위임명령(법률의 위임) 집행명령(직권)

총리령·부령(○○법 시행규칙) ─ 위임명령(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 - 집행명령(직권)

2.

- (1) 지방세법 제110조 :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다. (1990년 2월 1일 제정)
-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공장은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1991년 2월 1일 제정)
- (3) 지방세법 제110조 :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장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992년 2월 1일 개정)

3.

- (1) 법령에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시장이 甲에 대해 밤 12시 30분에 음식점에서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함.
- (2) ① 식품위생법 제70조 :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간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령 제10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밤 12시 넘어 주류를 판매한 자에게 6개월 이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甲 -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령 제10조를 취소하라(취소소송)

③ 시장 - 甲

4월 1일 - 6개월 영업정지처분(1월 10일 12:30 A 주류 판매)

甲 - 시장

6개월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여성가족부 공무원행동강령 [여성가족부훈령 제128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과 여성가족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의2(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여성가족부 공무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 부당한 인사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별표 2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 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다).

6.

-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과징금)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과징금 부과기준) ② 법 제49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7.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u>사업계획변경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u> (현 국토교통부령)<u>으로 정한다.</u>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사업계획변경의 기준·절차 등) ① 노선운송사업자는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상반기: 매년 3월 31일까지
 하반기: 매년 9월 30일까지
- ②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횟수를 4회 이상으로 할 것.
- 2.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 3.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변경은 도로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의 운행경로의 과다한 변경으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식품위생법[법률]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식품위생법 시	행규츠	[총리	령]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 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 제1항 전 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기: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2) 조리장 3) 급수시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이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타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호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이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여 한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3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영업허가실청선(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참 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_ :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 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	<u>지</u> 및 [23]과 [법 제8 같다.	80조에	따른 <u>행</u>
는 <u>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u> 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이 한다.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	[별표 23] 행정처	분기준(
영업소 폐쇄(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4항, 제8조, 제9조	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령	1차 위반	정처분 ² 2차 위반	기군 3차 위반
제4항 또는 제12조의2 제2항을 <u>위반</u> 한 경우 <이 하 각호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u>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u>총리령</u> 으로 정한다.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정지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① 형식(법규명령) 내용(행정규칙-제재적 처분기준)

□ 대통령령(○○법 시행령) □ 부령(○○법 시행규칙)

② 형식(행정규칙)

내용(법규명령)

- 훈령, 고시 등

- (1)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u>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u>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 2.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제조업
- 3. 식품접객업
- (2)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u>총리가 정하는</u>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 2.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제조업
- 3. 식품접객업
-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u>총리가 고시하는</u>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 2.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제조업
- 3. 식품접객업

진정서

사 건 : 2023 고1011

피고인 : 김 00

진 정 인 : 박 OO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 소 : 동작구 노량진동 0번지

연락처 : 000 - 0000 - 0000

진정취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진정이유

피고인은 평소 … ….

2023. 10. 11.

진정인 박 0 0

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귀하

진정서

사 건 : 영업허가처분 취소 청구

진 정 인 : 박 00

주소 : 동작구 노량진동 0번지

피진정인 : 동작구청장

진정취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행한 2023. 2. 1.자 영업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진정이유

진정인은 평소 … ….

2023. 4. 1.

진정인 박 0 0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귀하

행정심판청구서

사 건 : 영업허가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박 OO

주소 : 동작구 노량진동 0번지

피청구인 : 동작구청장

심판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인 동작구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2023. 2. 1.자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판청구의 이유

청구인은 평소 … ….

2023. 4. 1.

청구인 박 0 0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귀하

행정심판청구서

신 청 인: 박 OO

주소 : 동작구 노량진동 0번지

이의신청 대상처분 : 동작구청장의 2023. 2. 1.자 영업허가취소처분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은 평소 … … ….

신청인 박 O O 동작구청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6.

01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 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처분 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〇, ×) 2018 경행경채 3차

: 0

02 행정심판청구서의 형식을 다 갖추지 않았다면 비록 그 문서 내용이 행정심판의 청구를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부적법하다. (○, ×) 2012 사회복지직 9급

: ×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표시, 심판청구취지 및 이유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학사제명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

재량은 법규정 중 효과부분에만 존재함

요건규정 / 효과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시험의 방법) ③ 면접시험은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여 /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 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라면 /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면 /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기출문제집 26쪽 10번

- (1)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지방직(하) 9급
- ① 대법원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4항 본문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동의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에 위배되다고 하였다.
-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의 형식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에 의한 규율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면 되기 때문에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 ③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여부 자체는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기본사항으로서 법률유보사항이나 그 실시의 시기·범위 등 구체적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률유보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
- ④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할 입법사항이라고 하였다.

<해설>

 \bigcirc \tim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4항 본문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동의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적 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계획의 작성권이 있고 행정청은 단지 이에 대한 인가권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작성은 자치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이 자치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상,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 역시 자치법적 사항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본문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동의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 10. 12, 2006두14476).

2 0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u>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u>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헌재 2005. 2. 24, 2003헌마289).

3 0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 여부 자체라든가 그 연한은 교육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본질적 내용으로서 국회입법에 유보되어 있어서 <u>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u>되어야 할 기본적 사항이라 하겠으 나, 그 실시의 시기·범위 등 구체적인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 다(현재 1991, 2, 11, 90헌가27).

4 0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u>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u>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13. 1. 16, 2012추 84).

기출문제집 170쪽 01번

- (2)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 지방직・서울시 9급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법규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처분적 법규명령은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대법원 이외의 각급 법원도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으로 법규명령 조항에 대한 위헌·위법 판단을 할 수 있다.
- ④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bigcirc

구체적 규범통제 대상이 되는 <u>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u>은 <u>법규성을 가지는 명령</u> 등을 의미한다. 헌법 제114조 제6항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u>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u>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헌법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bigcirc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서의 법규명령은 '처분 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이른바 처분적 법규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우리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 1. 일반적·추상적 법령[재무부령(현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87. 3. 24, 86누656).
- 2. <u>법규명령이 처분성을 가지는 경우 그러한 명령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u>(대판 1953. 8. 19, 53누37).

3 0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는 대법원이 <u>최종적으로 심사</u>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법원 외에 1차적으로는 지방법원·고등법원도 모두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규범통제의 주체는 각급 법원이 모두 될 수 있다.

4 \times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92. 5. 8, 91누11261).

- 1. 특정다목적댐법에서 댐 건설로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제정된 경우, 법령제정의 여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2023 국가직 9급
-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 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2022 지방직 7급, 2022 군무원 9급
- 3.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 2022 소방직 9급
- 4. 추상적인 법령에 관한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2022 소방간부
- 5.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어 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 2020 경행경채

 $1.\bigcirc\ 2.\bigcirc\ 3.\times\ 4.\bigcirc\ 5.\times$

기출문제집 192쪽 19번

-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9 경행경 채 2차
- ① 헌법 제107조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포함된다.
- ②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헌법 제107조의 구체적 규범통제대상이 되지만,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은 헌법 제107조의 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헌법 제107조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의 결과 처분의 근거가 된 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경우, 그 명령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 ④ 헌법 제107조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의 결과 처분의 근거가 된 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bigcirc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포함된다**(대판 1995. 8. 22, 94누 5694).

1.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되는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 ×) 2012 서울교행

 $1.\times$

 \bigcirc

행정규칙 중 법규적 성질을 갖는 것(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행정규칙의 위법 여부가 그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제문제가 되므로 헌법 제107조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나,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은 외부적 효력이 없으므로 헌법 제107조의 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3\times$

통설은 명령 등이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경우 당해 행정입법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u>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법규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u>. 왜냐하면 법원은 구체적 사건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령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그 시행령의 무효를 선언한 대법원판결이 없는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2007. 6. 14, 2004두619).

정답: 2.(1)① (2)④ (3)③

(1)

건축법 제11조 : 이 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甲 - 시장

건축허가신청 (농지전용서류 첨부) 시장 - 甲

건축허가**거부처분** (농지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듦) 甲 - 시장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함. (왜냐하면 건축허가거부처분만 존재할 뿐 농지전용거부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2.

(1)

주택법 제17조: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乙 - 시장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지구단위계획결정서류 첨부) 시장 - 乙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기준단위계획결정처분) A - 시장

지구단위계획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왜냐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 있으면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처분도 존재함)

기출문제집 p.343 26번

1.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인 甲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

- ①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 ② 甲과의 협약이 없더라도 고속국도 관리청은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유관 이전시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 ③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된다.

<해설>

 \bigcirc

송유관매설허가(엄밀하게는 도로점용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에 해당한다)를 하면서 사후에 시설이전이 있을 경우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정지조건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먼저 조건과 부담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 부담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위 사안의 경우 부관의 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송유관매설허가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므로 조건으로 볼 여지는 없다(정지조건의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부담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한다).

 $(2)(3) \cap (4) \times$

-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②).
- 2.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u>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④).</u>
- 3.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③)(대판 2009. 2. 12, 2005다65500).

기출문제집 p.140 5번

- 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3 군무원 7급
- ①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② 건축법상의 건축신고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가·허가 등의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 행정행위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볼 수 있다.
- ③ 건축주 등은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건축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해설>

\bigcirc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판 2005. 2. 25, 2004두4031).

$(2) \times$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 1.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u>달리</u>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u>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u>고'에 해당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대판 2011. 1. 20, 2010두14954).

3 0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건축주 등으로서는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10. 11. 18, 2008두167 전합).

4

- 1.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u>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u>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2. 다만,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판결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은 상당하다(대판 1993. 10. 12, 93누883).

기출문제집 p.163 25번

- 3.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7 지방직 7급
- 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 ③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해설>

 \bigcirc ×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09. 6. 18, 2008두10997 전합).

\bigcirc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3. 10. 12, 93누883).

③ 〇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6. 1. 13, 2004다64340).

4 0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11. 1. 20, 2010두14954 전합).

정답: 1. ④ 2. ② 3. ①

	348 32					_	
1.	가	(,)	(告:	示) "	
				? 2010		가	. "
	7	ŀ		가			
		甲		가		가 甲	
< > ×							
	71						
	가	23	3 4	가	()	
,		가	(1994	l. 3. 8, 92 1	728).		
	가			가			
			,	(1	994. 3. 8,	92 1728).	
×				<u></u>		<u>`</u>	
					가 ,		
			,	:	가 , 가		71
		가		.:			가
,						()	

109 () ·

3.

14 () · · 가

```
37 (
                           )
                                            (
                                                                      (
1.
            가
                                     가
                        가
2.
                                              가
3.
                                             가
              451
                                                                            가
    1
                          가
                                                        60
    1
                             1
                 5
                                                                     90 (
      180 )
                                                                90 (
180 )
                                                                     90 (
      180 )
                                19
            18
             6
```

1.								•	
2.		2	2						
3.	,								
4.		•		•	•				
5.									
6.									
	240								
5.									

56738).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7.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 9.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仲裁)·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핵심집약 296쪽

- 1. 행정청은 당초에 공표된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변경된 처분기준을 다시 공표하여야 함.
- 2. <u>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u>. 다만, 해당 처분에 적용한 기준이 상위법령의 규정이나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함.
- 3. 사전에 공표한 심사기준을 심사대상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상 대방의 갱신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대판 2020, 12, 24, 2018두45633).

```
23 (
                                                              가
                                                                              5
                                  (
                                      가
                                          1
1.
                                   가
2.
       가
             가
3.
4.
                                                                            가
            1
                                                        2 )
                                     1 (
                         3
                 1
```

```
)
                  3 (
                                                                                                2016.
5. 29., 2022. 1. 4., 2023. 1. 17.>
1.
                                                             가
                                                                                              가
                                  가
                                           가
2.
   가.
4.
                 101
5.
6.
                                       J, <sup>[</sup>
                                                                            J, <sup>Γ</sup>
7. 「
             」, 「가
     2
                                                    ), 5 (
                                                                                     28 (
                   )
                          2
       : 2024. 1. 18.]
[
```

4 ()				
	,					
						•
						가
		•				
			•			
	•					
	792 11					
3.			?	2023	8	
10					·	
			•			
			•			
						가
•						
< >						
×						
	24	1 ()			
			<u>7</u>			•
×						
	4	()			
			가			
×						
			1			
	7	()			
			<u> </u>	,		
	•					
1.						

2.	가
3.	
4.	
5.	

×

15 () 7 . , _____.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	2.	3.
김포시 - 甲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거쳐야 함)	김포시 - 甲	이의재결(행정심판의 성격을
	수용재결	가짐)
	(1) 수용재결은 재결이라는 명칭	임의적 절차에 불과
	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	
	이 아니라 최초의 처분임.	
	(2) 신청은 사업시행자인 김포시	
	만이 할 수 있고 甲은 김포시에	
	대해 수용재결신청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을 뿐임.	
	(3) 김포시는 수용할 토지면적과	
	금액을 기재해서 신청함.	
	이때 토지수용위원회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	
	음.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김포시 - 甲	
수용재결 1. 면적	
2. 보상금	

(1) 수용재결 자체	(2) 보상금을 다투는 경우
甲 -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甲 - 김포시
수용재결 취소소송	보상금증액소송

소송물 논의

동작구청장 - 甲

2.1 1년 영업정지처분

이유 : 1.2 청소년인 A에게

4.1

(1) 甲 - 동작구청장 (2) 甲 - 동작구청장

취소소송

4.10 취소소송

1.2 A에게 주류판매 X 사전통지 X

주류 판매

(3) (1), (2)는 동일한 소송 : 소송물(소송에서 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처분의 위법성일반, 그 자체(위법성을 구성하는 개별사유가 아님)을 의미

2.

토지관할은 임의관할(전속관할이 아니다)

: 합의에 의해서도 관할 발생(합의관할). 합의 없이 원래 관할법원 아닌 곳에 소제기 하였더라도 그 법원 에서 당사자가 이의 없이 변론을 하면 관할 발생(변론관할)

3.

관련청구(이송 및 병합할 수 있음)

(1) 유형

(1)

동작구청장 - 甲	甲 - 동작구청장	甲 - 동작구
2.1	취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6개월 영업정지처분	4.1	5.1

2

동작세무서장 - 甲	甲 - 동작세무서장	甲 - 대한민국
2.1	4.1	5.1
1000만원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

3

동작세무서장 - 甲	甲 - 동작세무서장	甲 - 국가
2.1	4.1	5.1
(번호판)압류처분	취소소송	원상회복청구소송

(2) 병합의 종류

① 甲 - 0

- 취소소송

_ 손해배상청구소송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둘 다 성립가능,

판결문도 둘 다 나옴(단순병합).

甲 - A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손해배상청구소송 甲의 토지를 A가 불법으로 사용하면 甲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 해배상청구권이 둘 다 성립 가능. 다만 甲은 하나만 이기면 목적이 달성됨(선택적 병합).

甲 - 0

지수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하나의 처분이 만약 하자가 있을 시 중대·명백한 하자이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취소사유

따라서 처분이 무효라는 것과 처분이 취소사유라는 것은 동시에 성립 불가

능. 즉 양립 불가

이 경우에는 두 개 재판을 굳이 동시에 심리ㆍ진행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원고는 순서를 정해서 청구를 들어가야 함. 주위ㆍ예비적 병합(1순위ㆍ예비 순위의 의미임)

(3)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병합 제기의 경우

(1)

동작세무서장 - 甲-1000+1000모.1무- 국가1000만원 조세부과처분납부

그 후 甲이 2.1 처분에 위법사유 (무효는 아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

2

甲 - **국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당연히 기각 판결을 받음(::공정력).

3

서울행정법원 甲 - 동작세무서장 취소소송제기

쉬소소송세기

甲이 1심 판결 승소(취소판결 받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가의 이득은 부당이득이 아님. 왜냐하면 판결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발생함. 판결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때 확정됨(그 외 당사자의 상소포기 등이 있음 ; 몰라도 됨). 1심 판결만으로는 아직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이 아님. (4)

서울행정법원 甲 - 동작세무서장

☐ 취소소송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그러나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제기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처분의 취소가 확정될 필요는 없고 그 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함. (: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같은 날 선고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이기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음)

4.

원고

(1) 행정기관 - 행정청 - 보조기관 - 의결기관 행정주체(사람)

- (2) 충북대학교 총장은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음.
- (3)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 경우
- ①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조치요구(중징계요구를 취소하라)를 함. 이 경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안 따르자니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있 고, 따르자니 징계대상자를 봐주는 것이 되므로 이 또한 불법임. 이처럼 중대한 불이익을 받음에도 그 처분을 다툼 별다른 방법이 없음.
 -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긍정
- ②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장

(4)

- ① 행정주체 간에는 건축허가 대신 건축협의라는 용어 사용 : 건축협의는 건축허가로 처분 건축협의의 취소는 건축허가의 취소로 또한 처분임.
- ② 서울시(원고)가 양양군수(피고)를 상대로 건축협의취소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5.

소송요건 처분성 여부 (처분의 존부, 처분이냐 아니냐) 본안심리에서 다룰 문제 처분이 위법한가 적법한가

ex) 처분이 절차상 하자(예컨대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해 청문을 안 거침)가 있으면 처분이 위법함. 이는 본안문제이지 소송요건과는 무관함. 처분청에게 권한이 있는지의 문제(예컨대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처분을 함) 또한 처분이 위법한지의 문제이므로 소송요건과는 무관함.

6.

취소소송의 소송요건(미구비시 각하판결)

- ① 원고적격
- ② 소의 이익
- ③ 대상적격
- ④ 피고적격
- ⑤ 제소기간 등

본안(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판단)

처분의 위법성 심리 [위법 - 인용판결

적법 - 기각판결

7.

- (1) 본안심리(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심리)에서 중요한 원리가 변론주의임.
- (2) 변론주의
- ① 내용
 - 주장책임: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으면 법정에서 주장해야 하고 주장된 사실만 법원이 심리한다는 것을 의미.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법관이 알고 있더라도 재판자료로 쓰지 못함.
 - ① 자백의 구속력 : 자백(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 즉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의심이 있더라도 직권으로 밝혀낼 수 없음.
- ② 예외 도 소송요건 행정소송법 제26조 : 단, 제26조 조문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현출된 사항만 직권으로 심리 (그 의미가 제한적임)
- ③ 소송요건은 변론주의의 예외로서 주장책임, 자백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음.
 - 처분의 존부(존재 여부)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은 처분인지 아닌지를 직권으로 조사할수 있음.
 - © 즉, 당사자들이 처분 여부에 관해 어떤 주장을 한 바 없더라도(예컨대, 피고측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안은 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바 없더라도) 법원은 처분성 여부에 관해 의심이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하여 각하판결을 할 수가 있음.
 - © 소송요건은 변론주의의 예외로서 자백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 · 피고가 처분이라는 점에 일치된 주장을 하더라도 법원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하여 각하할 수 있음.

8.

원처분주의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 ① 원처분주의에 따르면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 ② 이때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하자를 말함.

(주체 - 위원자격 없는 자가 위원회에 존재

형식 - 문서로 안함.

절차 -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함.

내용 - ※)

*

동작구청장 - 甲 신규버스사업면허 2.1 A 기존업자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A - 동작구청장
4.1
취소심판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A - 동작구청장
5.1
인용재결

- 甲은 2.1자 <u>면허</u>는 <u>적법</u>하나 5.1 인용재결에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임.
- © 이른바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그 청구를 <u>인용</u>하는 내용의 <u>재결</u>로 <u>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u>는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③ 적법한 심판청구를 기간이 지난 것으로 오인하여 각하한 재결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 있음.

④ 수정재결

동작구청장 - 甲 2.1 3개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甲 - 동작구청장 2.10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甲 - 동작구청장 2.25	법원 甲 - 동작구청장 4.1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500만원
동작구청장 - 甲 2.1 3개 <mark>월 영업정</mark> 직처분		2개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 (예컨대 500만원)	과징금처분취소소송

⑤ 변경명령재결

5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동작구청장 - 甲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동작구청장 - 甲
2.1	甲 - 동작구청장	甲 - 동작구청장	5.1
1년 영업정지처분	2.10	4.1	1500만원
16 000000	취소심판	1년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
		6개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라(변경명령재결)	
동작구청장 - 甲			
2.1			
1년 영업정치저분	: 취 _스	소소송의 대상은 동작구청장의 :	2.1자 1500만원
⇒ 1500만원 과징금처분	과정	장금처분이 됨(제소기간은 4.1부	터 90일이 됨).

6

이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법원은 원고청구를 기각함.

(2) 개별법상 재결주의

특허청, 노동위원회, 감사원	0
토지수용위원회	Χ

(3) 사립학교교원

9.

소의 변경

- 1. 행정소송법상 소 변경
- (1) 소 종류의 변경
- 1
- \bigcirc

동작구청장 - 甲甲 - 동작구청장甲 - 동작구청장2.14.18.1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L)

- \Rightarrow 비록 8.1을 기준으로 하면 90일이 지났지만 4.1을 기준으로 하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임(즉, 처음 에 소를 제기할 때 변경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 ©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법원의 직권 X, 왜냐하면 소변경은 구소의 취하와 <u>신소의 제기</u>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1)

행정청 - 甲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甲 - 행정청	행정청 - 甲	甲 - 행정청
2.1	甲 - 행정청	甲 - 행정청	5.1	7.1	8.1
파면처분	2.10	기각재결	(파면처분)	파면 - 강등	(강등처분)
A로부터	취소심판	4.1	취소소송	처분을 변경	취소소송
뇌물수수	A로부터		1		
	뇌물수수 X			소 종류는 바뀌지 않음	

- ②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 ③ 변경된 처분이 원래 필요적 심판전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도 행정심판을 다시 거칠 필요는 없음.
- 2. 민사소송법상 소 변경 : 청구취지변경

10.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u>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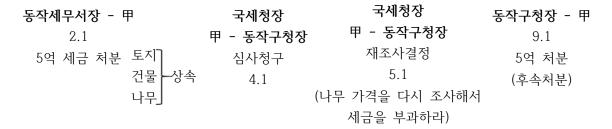
1.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1)

대통령 - 甲	甲 - 대통령	甲 - 대통령	
2.1	4.1	5.1	⇒ 제소기간은 5.1부터 90일
처분	취소심판	각하재결	

⇒ 제소기간은 2.1부터 90일

2. 재조사결정



제소기간 기산점 ⇒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월 1일)

11.

제소기간 준수 여부 기준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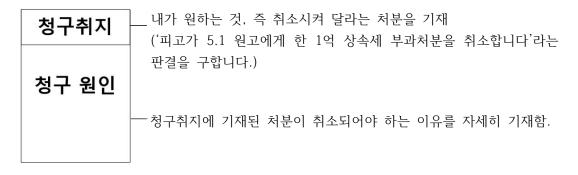
1. 소 종류 변경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변경되는 때가 아니라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함.

2. 청구취지변경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함.

소장



12.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를 바꿀 수 있다.

민사소송의 일반론에 따라 변경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함.

```
1154
                7
1. 甲
                                                           )
                                                                                     Α
                                           J (
                                                            甲
                                      ? (
                                                                  ) 2022
                                                       가
   42 (
                        )
                                                                                가
   43 (
                                  )
                                         42
                                            1
   55 (
             )
                                      43
                      500
  甲
                   甲
                   甲
       甲
  甲
                                                                          ,甲
  甲
                                          Α
                                                  甲
  ×
                                          가
                                                                                 가
                                                            38
                                                                   2
                                                                        _(
                                                                             2017. 6.
 15, 2014 46843).
```

×

	3 (), , , , ,	, ,
		가
	, 가 가	, 가 가
	· 가	가
		г
	(2017. 6. 15, 2014 46843).	가
×		
	甲 · · · · · · · · · · · · · · · · · · ·	
		(2006. 2. 10, 2003 5686).
×		ш
		甲
г	20 1 • 3 • 4	r
	(1993. 11. 23, 93 16833).	

: 1.

gong.conects.com

1.

집행정지제도

- 1. 집행부정지원칙
-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집행 등은 정지되지 않음이 원칙인데, 이를 <u>집행부정지원칙</u>이라고 함. 그러나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관철하면 당사자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예외적으로 원고의 권리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임시적인 조치로서 처분의 집행 등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가구제)제도가 인정되고 있음.
- -행정심판법도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집행부정지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집행정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2. 집행정지의 요건
- 1) 적극적 요건
- (1) 적법한 본안소송(취소소송 등)의 계속
- 적법한 본안소송이란 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
-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요건이 아님.
- © 본안소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집행정지만 신청할 수는 없음.
- ②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
- © 본안소송(취소소송) 제기 후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후 <u>본안소송이 취</u>하되어 소송계속 상태가 아니게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됨.

소송이 적법하다는 것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므로 구별을 요함.

- 1. 소송이 적법하다는 것은 소송이 소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즉,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
- 2.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은 처분이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처분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이 아닌 것이 원칙이지만 본안소송 그 자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함.
- (2) 처분 등의 존재
- 처분을 다투는 소송인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 인정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음.
- ©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ex. 1000억에 대한 과징금취소소송에서 500억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
-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
-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손해
- 기업의 경우 중대한 경영상 위기
- ©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중대한 손해예방의 필요로 되어 있음.
- (4) 긴급한 필요(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 2) 소극적 요건
- (1) <u>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을 것</u>(공공복리란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u>구체적, 개별적</u> 공익을 말함)
- (2) <u>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처분 후 처분의 근거법률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변경된</u> 법률에 따르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것.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고주장을 100%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취소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0%임. 이와 같이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집행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집행정지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를 인정할 수 없음)

- 3. 집행정지의 절차
- 1)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행해짐.
- 2) 집행정지의 관할법원은 본안이 계속된 법원임.
- 3) 집행정지의 <u>적극적 요건</u>은 <u>신청인</u>에게 주장·소명책임이 있고, <u>소극적 요건</u>은 <u>행정청에게 주장·소명</u> 책임이 있음.
- 4. 신청인 적격
- 1) 본안소송의 당사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
- 2) 행정소송법에서는 제3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의 입장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
- 5.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 -거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이상으로 새로운 상태를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6.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 1) 처분의 효력정지
- -당해 처분이 잠정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두는 것
- 2) 처분의 집행정지
- 3) 절차의 속행정지
- -당해 처분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후속절차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
- 4) 효력정지의 보충성
- -<u>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u>용되지 아니함.
- -건물철거명령 후 계고처분과 영장에 의한 통지처분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것. 처분의 상대방은 통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처분 상대방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철거를 막는 것임. 따라서 법원은 이 경우 후속절차의 속행정지를 명해서도 원고의 청구 목적이 달성 가능해지므로 굳이 통지처분의 효력 정지를 명할 필요도 없고 명해서도 안 됨.
- 7.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 1) 형성력
- -<u>집행정지 중 효력정지는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효력을 잠정</u>적으로 상실시킴.

관련판례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 납부기간은 진행되지 않음.

2) 기속력

-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집행정지결정에도 준용되므로 <u>당사자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u> 관계행정청을 기속함. 집행정지결정을 위반한 처분은 무효임.
- 3) 시간적 효력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장래에 향하여 당

연히 소멸하고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님. <u>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u> 원칙적으로 집행정지결정 시점부터 <u>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함</u>. 따라서 집행정지결정 전에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8.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 1) 취소의 사유
-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해 집행정지결정을 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2) 취소의 효과
- -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되면 처분의 원래의 효과가 발생함.

9.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나 집행정지신청기각의 결정 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음. 다만,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그 즉시항고의 대상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음(즉,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집행정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뜻임).

10. 기타

2. 1	6. 30	7. 25	7. 31	10. 30
행정청 – A	행정청 – A	A - 행정청	집행정지 결정	기각판결
매월 1000만원	보조금 교부결정	①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8월, 9월,	(6월 30일 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10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소송	보조금 지급됨)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남)
		② 보조금 교부결정		∴ 8월, 9월, 10월
		취소처분의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정지신청		반환을 명하여야 함.

1.

1. 기판력

(1) 어떤 사항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항이 후소에서 문제되었을 때 기존에 내려진 판결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기존에 내려진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힘

p.1111

01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이후의 소송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O, x)

: 0

02 기속력은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되었을 때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한다. (○, ×)

: × , 기속력 → 기판력

(2)

동작구청장 - 甲	서울행정법원 甲 - 동작구청장	서울행정법원 甲 - 동작구청장	지방법원 甲 - 동작구
2.1	2.10	8.1	9.1
1년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인용판결확정	손해배상청구소송
		(처분이 위법함)	(동작구는 2.1자 처분
			적법이라고 못함.
			법원도 2.1자 처분
			적법이라고 판단 못함)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甲 - 동작구청장	甲 - 동작구청장
		8.1	9.1
		기각판결확정	무효확인소송
		(처분이 적법함)	[甲은 2.1자 처분
			무효라는 주장 못함.
			법원도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 못함.
			∵ 8.1에 처분이

p.1111

01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 ×)

: × , →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도 미친다.

p.1112

01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〇, ×)

 $x \to \text{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u>청구기각의 확</u> 정판결이 있는 경우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적법이라고 이미(기) 판단(판)하였음]

- (3) 인용판결, 기각판결 모두에 인정됨.
- (4) 행정소송법에 명문규정 없음. 단,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는 기판력에 관한 규정 있음.

행정소송법 제8조 【법적용례】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p.1111

01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통설 \cdot 판례의 입장이다. (\bigcirc, \times) : \times , \rightarrow 기판력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명문규정 없음.

02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0

(5)

- ① 기판력을 너무 넓게 인정하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 이미 판결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김.
- ②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상의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음.
- ③ 이런 점을 고려하여 기판력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미침.
 - 주관적 범위
 - ⓐ 이전 소송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ex. 상속인)에게만 미침.

p.1112

01 기판력은 당해 소송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 는 미치지 않는다. (○, ×)

 $: \bigcirc$

⑤ 다만, 취소소송의 경우 주체를 피고로 하지 않고 처분청을 피고로 함. 따라서 취소소송(처분청을 피고로 함)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후소(後訴)인 손해배상청구소송(행정주체를 피고로 함)제기시 취소소송의 처분청이 속하는 행정주체에도 기판력이 미침(동작구와 종로구는 서로 다른 주체이므로 상호 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그러나 <u>동작구와 동작구청장은 서로 다른 주체가 아니라 주체와, 주체를 위한 행정기관의 관계이므로 기판력이 미침).</u>

p.1112

- 01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는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국가를 피고로 하여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취소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〇, ×)
- : × , <u>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u>된 자가 과세처분의 <u>무효를 주장</u>하여 과 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u>취소소송의 기판력에 반한다</u>.

-1000 +1000

甲 - 국가 □ 동작세무서장 - 甲 甲 - 동작세무서장 甲 - 동작세무서장 甲 - 국가 2.10 2.1 4.1 8.1 8.10 납부 1000만원 1000만원 기각판결확정 부당이득반환 세금부과처분 세금부과처분 청구소송 (2.1자 처분은 취소소송 적법하다는 의미의 (심판을 거쳤다는 판결임) 것을 전체할 것)

ⓐ 甲은 2.1자 <u>처분이 위법이므로</u> 국가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u>주장을 할 수 없음</u>. 왜냐하면, <u>8.1자 판결</u>에서 2.1자 <u>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기각</u>했기 때문에 2.1자 세금부과처분 은 살아 있음.

즉, 기존에 판결이 확정되면 후속소송에서 동일한 사항(2.1자 세금부과처분)이 문제되었을 때 당사 자는 이와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음. 이것이 기판력

- □ 객관적 범위
 - @ 판결의 주문에만 미침.

주문	⇒ 판결의 결론을 적는 부분 "피고가 2020.5.1. 원고에게 한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주문의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를 상세히 적는 부분

p.1112

01 판례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〇, ×)

: x , 판례는 <u>기판력</u>의 객관적 범위가 <u>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u>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⑤ 이유 부분에 언급된 부분까지 기판력이 미치게 되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함 (이유 부분에 언급이 있었다는 이유로 후속소송을 제기 못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

甲 - 동작구청장

ⓒ 소송물이 다르면 기판력 안 미침.

동작구청장 - 甲

0 1 1 0 0 1		
2.1	2.10	4.20
i) 영업허가취소처분	i)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	ii) 건물철거명령취소소송
;i) 건물철거명령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위법성	(2.10자 소송과는
,	여부가 소송물)	소송물이 다름)

p.1112

01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〇, ×)

: × , →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u>청구기각</u>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

甲 - 동작구청장

02 취소소송에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 에 미치지 아니한다. (〇, ×)

: 0

03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bigcirc, \times)

 $: \cap$

◎ 시간적 범위

가해자 피해자 (a)-1

> A - 甲 2.1

교통사고

甲 2.10

① 양쪽 다리 보행장애

② 한쪽 눈 실명

甲 - A (a)-2

4.1 2억

손해배상청구소송

(①을 이유로)

甲 - A 8.1 판결확정

甲 - A 4.1

3억 손해배상청구소송

(①, ②를 이유로)

甲 - A 9.1

1억 손해배상청구소송

(②를 이유로 X : 기판력) 당해 사건의 사실심변론종결시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내세워 또다시 소송제기하는 것은 소송을 무한 반복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허용 안 됨.

(b) 가해자 피해자

A - 甲 2.1

甲 2.10 甲 - A

甲 - A

8.1

② 사고 후유증으로 확정 후 비로소

한쪽 눈

실명

甲

9.1

甲 - A 10.1

1억 손해배상청구소송 (②를 이유로 가능함) 8.1자 판결 왜냐하면, ② 한쪽 눈 실명은 이전 소송(4.1에 제기한 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

> 사실심변론종결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은 새로운 소송을 통해

주장하더라도 기판력에 의해 배제되지 않음.

(새로운 주장은

사실심변론이 끝날 때까지만 가능)

따라서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는지, 차단되지 않고 허용되는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함.

교통사고

양쪽

다리 보행장애 4.1 2억

판결확정 손해배상

청구소송

p.1112

01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 ×)

: 0

2. 형성력

(1)

①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 등의 효력은 행정청의 별도 행위 없이 취소의 효과가 발생

p.1114

01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〇, ×)

② 개념상 인용판결에서만 발생

p.1113

01 甲이 관할행정청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취소판결에는 기판력은 발생하지만 형성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bigcirc, \times) : \times , 취소판결에는 기판력은 발생하지만 형성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to 취소판결에는 기판력뿐만 아니라 형성력도 발생한다.

02 형성력은 원고승소판결과 원고패소판결 모두에 인정된다. (○, ×)

: × , → 형성력은 원고승소판결에 인정된다.

03 확정된 청구기각판결의 형성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행정청 사이에 발생할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 ×)

: × , 청구기각판결 → 형성력은 청구인용판결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3)	동작세무서장 - 甲	甲 - 동작세무서장	甲 - 동작세무서장	동작세무서장 - 甲
	2.1	4.1	8.1	9.1
	1000만원	취소소송	1000만원	2.1자 처분 중
	세금부과처분	(심판을 거쳤음을	세금부과처분	300만원을 감액하는
		전제할 것)	취소판결 확정	경정처분을 함.
				(이는 취소판결 후에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으로 <u>당연무효</u> 임)
				∵ 8.1자 판결로 2.1자
				처분은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p.1114

01 취소판결이 확정된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수 없고 단순위법인 취소사유를 가진 처분이 될 뿐이다. (○, ×)

: \times , \to <u>취소판결이 확정된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처분</u>을 하였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경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나 <u>당연무효의 처분이다</u>.

02 취소판결 후에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O, x)

: 0

(2) 내용

- ① 형성효(취소판결만으로 처분의 효력은 소멸 됨)
- ② 소급효(처분은 판결시가 아닌 처분 당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됨)

p.1114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〇, ×)

: 0

③ 제3자효

 \bigcirc A - 동작구청장 동작구청장 – A 甲 - 동작구청장 甲 - 동작구청장 2.1 4.1 5.1 11.1 버스사업면허신청 신규버스사업면허 A 버스사업면허 A 버스사업면허 甲 기존사업면허 취소소송 취소판결확정 판결의 효력은 원고인 甲, 피고인 동작구청장 외에 제3자인 A에게도 효력 발생

甲 - 동작구청장甲 - 동작구청장5.111.1

A 버스사업면허 무효확인소송

11.1
A 버스사업면허 무효확인판결확정 A에게도 효력 발생 제3자효에 대한 효력은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됨.

p.1114

- 01 제3자효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
- $: \times , \to M3$ 자효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M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p.1115

0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은 확인판결이라고 하여도 행정처분의 취소판결과 같이 소송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것이다. (○, ×)

: ()

- 3. 기속력
- (1)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힘

p.1115

- 01 기속력은 청구인용판결뿐만 아니라 청구기각판결에도 미친다. (○, ×)
- : \times , → <u>기속력</u>은 형성력과 동일하게 <u>청구인용판결의 경우에만 인정</u>되며 청구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02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발생하나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

 $: \bigcirc$

03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 이후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〇, ×)

 $: \bigcirc$

p.1116

01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그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는 인용판결에 한하여 인정된다. (〇, ×)

: 0

- (2)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주문의 결론을 내리게 된 판결 이유 중에 설시된 사유에도 미침.
- (3) 청구인용판결의 경우에만 인정됨.
- (4) 내용
 - ① 반복금지의무(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동일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됨)

\bigcirc	동작구청장 - 甲	甲 - 동작구청장	甲 - 동작구청장	동작구청장 - 甲	동작구청장 - 甲
	2.1	4.1	8.1	9.1	9.1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취소판결확정	영업허가취소처분	영업허가취소처분
	(1.5 청소년인		(1.5 청소년인	① 1.5 청소년인	② 1.10 청소년인
	A에게 주류판매)		A에게 주류판매 X)	A에게 주류판매	B 고용
			2.1자	(기속력 위반으로	(기속력 위반 X)
			영업허가취소처분은	무효)	∵ 다른 사유
			2.1자로 소급하여	∵ 동일한 사유로	(또는 새로운 사유)
			행정청의 별도 행위	동일한 처분	
			기다릴 것 없이		
			소멸함. 이것이 형성력		

주문 ⇒ 동작구청장이 2.1자 甲에게 한 영업허 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甲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甲은 1.5 청소년인 A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 실이 없다.

p.1116

01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〇, ×)

 $: \bigcirc$

02 기속력을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O, x)

: 0

p.1120

01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취소확정판결을 한 사유와 동일 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으로 허용될 수 없다. (○, ×)

: 0

02 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 (○, ×)

 $: \times , \to$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u>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u>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동작구청장 - 甲	甲 - 동작구청장	甲 - 동작구청장	동작구청장 - 甲
2.1	4.1	8.1	9.1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취소판결확정	3개월 영업정지처분
(1.5 청소년인 A에게 주류판매)	주문 ⇒	동작구청장이 2.1자 甲에게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5 청소년인 A에게 주류판매) (기속력에 위반되지
	이유 ⇒	甲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보면 甲이 1.5에 청소년인 A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그동안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u>甲에게 한</u> <u>영업허가취소처분은 비례의 원칙</u> <u>에 위반</u> 되어 위법하다.	않음) : 판결에서 적시한 <u>위법사유를 보완</u> 하여 행한 처분임.

p.1117

01 법규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〇, ×)

: 0

02 행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보완한 후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〇, ×)

: 0

동작구청장 - 甲	甲 - 동작구청장	甲 - 동작구청장	동작구청장 - 甲
2.1	4.1	8.1	9.1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취소판결확정	영업허가취소처분
(1.5 청소년인 A에게 주류판매)	주문 ⇒	동작구청장이 2.1자 甲에게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번에는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처분을 함.
		甲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보면 甲이 1.5에 청소년인 A에게 주류를 판매한	(1.5 청소년인 A에게 주류판매) (기속력에 위반되지
	이유 ⇒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u>권리를</u>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甲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은 절차상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않음) : 판결에서 적시한 형식적·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행한 처분임.

② 재처분의무(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u>판결의 취지에</u>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 야 할 의무,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음)

甲-동작구청장2.1음식점영업허가	동작구청장-甲 4.1 거부처분	甲-동작구청장 5.1 취소소송	甲-동작구청장 8.1 취소판결확정	동작구청장-甲 9.1 거부처분	동작구청장-甲 9.1 거부처분
신청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님)	주문 ⇒	동작구청장이 4.1자 甲에게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① 화장실이 수세식 아님 (기속력 위반으로 무효)	② 4.10 법이 개정되었는데 신법에 따르면 화장실에 손
		이유 ⇒	甲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甲의 2.1자 영업허가신청은 화장실이 수세식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위만으로 무요)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	와성실 설비 전 생 실 설비 가능을 보고 그 가는 지를 가지 되었다. 무런 설비 있고 그 가는 지를 가지 하는 지를 가지 하는 지를 하는 이 이 가게 하는 지를 하는 이 이 이 있는 이 이 이 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p.1117

01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재처분내용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원고가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〇, ×)

: 0

02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〇, ×)

: 0

p.1118

01 甲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허가가 거부되자 甲이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허가를 하여야 하며 이전 처분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〇, ×)

: × , → 甲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u>허가</u> 가 거부되자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할행정청은 <u>이전 처</u>분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p.1119

01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다시 거부처분을 하여도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다. (○, ×)

: ()

p.1121

01 취소소송에서 위법성판단 기준시점인 처분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실관계나 개정된 법령과 같이 새로운 처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 ×)

: 0

©	A-동작구청장 2.1 공장건축허가 신청	동작구청장-A 4.1 공장건축허가처분 甲 주민	甲-동작구청장 5.1 A 공장건축허가취소소송 주문 ⇒	甲-동작구청장 8.1 취소판결확정 동작구청장이 4.1자 A에게 한 공 장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case①이라면 공청회를 거친 후 공장건축허가가 가능하므로 동작구청장은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함.
			이유 ⇒	甲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보면 case① 甲에게 <u>공청회를 거치지</u>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4.1자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case② <u>해당 지역은 주거지역</u> 이 다. 따라서 4.1자 처분은 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case②라면 공장건축허가 불가능, 따라서 재처분의무 없음.

p.1119

01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

: 0

③ 결과제거의무(원상회복의무, 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위법한 처분에 의해 초래된 상태를 제거할 의무를 가짐)

동작구청장 - 甲	甲 - 동작구청장	甲 - 동작구청장	번호판 돌려줘야 할 의무
2.1	4.1	8.1	압류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자동차번호판	취소소송	취소판결확정	압류재산을 반환하여야 함.
압류처분			

p.1119

01 자동차의 압류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그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O, ×)

: 0

02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〇, ×)

: 0

- (5) 범위
- ① 주관적 범위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u>모든 관계 행정청(예컨대 동작경찰서장이 甲에게 한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해</u> 甲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확정판결을 받으면, 동작경찰서장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음)

p.1115

01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

: 0

p.1120

01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〇, ×)

: 0

02 기속력은 당해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며, 그 밖의 다른 행정청은 기속하지 않는다. (○, ×)

: × , → 기속력은 당해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도 미친다.

② 객관적 범위

주문뿐만 아니라 주문의 전제가 된 사실 인정과 판단 즉, 이유에서 제시된 구체적 위법사유에도 미침.

p.1120

01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을 구속하는바, 여기에는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가 포함된다. (〇, ×)

: 0

- 02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主文)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〇, ×)
- : × , →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 03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 ×)

: 0

③ 시간적 범위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동일한 사유가 아니라 새로운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임.

4. 간접강제(기속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

(1)	甲-동작구청장	동작구청장-甲	甲-동작구청장	甲-동작구청장	① 동작구청장이	② 동작구청장-甲
	2.1	4.1	4.10	8.1	처분 안함	거부처분
	음식점영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취소판결확정		(화장실이
	신청	(화장실이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님)
		수세식이 아님)		수세식임)		

(2) 8.1자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동작구청장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甲이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은 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② <u>즉시</u>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3) ①의 경우는 물론 ②의 경우(재처분을 하였으나 그것이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임)에도 간접강제할 수 있음.

p,1122

01 처분청이 재처분을 하였는데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x)

: 0

(4)

- ①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 안 됨.
-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과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 모두 준용 됨.

p.1115

01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에 대하여 기속력 있음을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〇, ×)

: 0

p.1121

01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제도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도 준용된다. (○, ×)

: 0

p.1122

- 01 간접강제결정에 기한배상금은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 또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 × , → <u>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u>은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 또는 손해 배상이 아니라, <u>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다</u>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0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더 이상 배상금의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〇, ×)

: ()

(5)

- ①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수단
- ② 따라서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더이상 배상금의 추심은 허용되지 않음.
- cf) 법원의 직접처분권 없음.

1.

```
16 ( )
가
가
```

2.

```
18 2( )
```

3.

```
)
      27 (
                                                             90
                                    가
                      (事變),
                                                     1
                        가
                                       14
                                       30
                         180
                                                                    가
                        (不變期間)
      2
                    1
        가
                              1
                                        3
1
        6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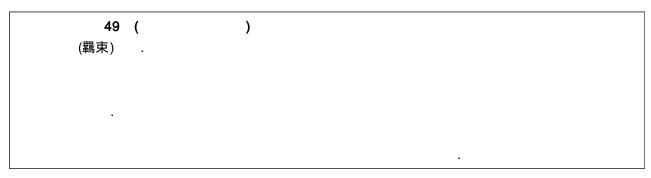
5.

	31 ()		가	•	
			가	가		
				가		
1		30	2			
	•					

6.

43 2()			
		. ,	
1		•	
가	,	가	가
3	48	50 , 50 2, 51	

7.



8.

	50 (٦L)		49	3
71		7 F		,		가

9.

			()	()
			×			
	()				